

아리야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361호 2015. 7. 1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5-50호 사복읍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1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5-486호 정선 군관리계획(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
(안) 공람·공고 3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고시 제2015-50호

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

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4조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2조 내지 제71조 및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와 「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」에 의한 『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』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7월 1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사북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
2. 사업의 목적 : 사북읍 소재지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주 공간 창출 및 농촌의 특성화·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
3. 사업의 내용 및 구역
 - 사업구역 :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
 - 사업내용
 - 기초생활기반확충 : 하이원거리조성(L=1,050m), 쌈지공원조성(A=252㎡), 도심주차장조성(A=1,002㎡)
 - 지역경관개선 : 전선지중화사업(L=450m), 지장천변경관개선(L=780m), 진입도로경관개선 1식
 - 지역역량강화 : 주민교육 및 홍보·마케팅, 부대비용 등 1식
4. 사업비 : 10,000백만원(국비 7,000, 지방비 3,000)
5. 사업기간 : 승인일로부터 2016.12.31.까지
6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,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
8. 열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(033-560-2464, 2475)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■ 하이원거리조성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총면입면적(㎡)		소 유 자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
계		19필지		981	981	
1	사북읍 사북리	368-13	대	12	12	남기자
2	사북읍 사북리	368-35	대	84	84	남기자
3	사북읍 사북리	368-36	대	2	2	이한성
4	사북읍 사북리	368-37	대	3	3	김정국
5	사북읍 사북리	368-38	대	3	3	김이천
6	사북읍 사북리	368-24	대	86	86	최재광외2
7	사북읍 사북리	368-39	대	130	130	최재광외2
8	사북읍 사북리	377-17	대	32	32	이해민
9	사북읍 사북리	377-47	대	67	67	이해민
10	사북읍 사북리	377-18	대	65	65	정춘성
11	사북읍 사북리	377-48	대	87	87	정춘성
12	사북읍 사북리	377-20	대	30	30	강정애
13	사북읍 사북리	377-49	대	86	86	강정애
14	사북읍 사북리	377-24	대	26	26	최춘자
15	사북읍 사북리	377-50	대	37	37	최춘자
16	사북읍 사북리	377-30	대	17	17	김계선
17	사북읍 사북리	377-51	대	33	33	김계선
18	사북읍 사북리	452-66	천	167	167	김미자
19	사북읍 사북리	452-125	천	14	14	김미자

■ 도심주차장조성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총면입면적(㎡)		소 유 자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
계		2필지		508	508	
1	사북읍 사북리	345-1	전	220	220	이진욱
2	사북읍 사북리	345-10	전	288	288	이진우

■ 천변쌔지공원조성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총면입면적(㎡)		소 유 자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
계		2필지		252	252	
1	사북읍 사북리	367-4	대	113	113	정선군
2	사북읍 사북리	367-5	대	139	139	정선군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5-486호

정선 군관리계획(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강원도고시 제2007-241호(2007.11.09.)로 조성계획 승인 및 정선군 고시 제2013-33호(2013.04.19.)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된 모평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(주소, 성명, 전화번호 포함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6월 19일

정 선 군 수

1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청취
2. 모평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(안)
 - 가.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
 - 나. 면 적 : 119,830㎡(변경없음)
 - 다. 토지이용계획 변경(안) : 계재생략
 - 라. 세부시설계획 변경(안) : 계재생략
3. 공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건축과, 정선읍사무소
4. 공람기간 : 신문게제일로부터 14일간 이상
5.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: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정선읍사무소로 서면제출
6.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와 정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,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람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